

이하론소화용구는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스프레이式으로 방사하는 기구로서 檢定規則에서 定하는 1 단위 以上의 消火器를 除外한 소화약제의 重量이 700 g 미만인 것을 말한다」로 定義되어 있다.

제 2 조에서는 消火用具의 容器에 대한 規定이 나와있고 제 3 조, 4 조에는 消火用具의 性能試驗과 방사시험, 제 5 조에는 消火藥劑에 대한 規制, 제 6 조에는 消火用具에 表示해야 할 事項등이 나와있다.

다. 改正「안전점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업무규정」

——內務部 訓令 제 705 號(82. 2. 11)——

1981年 4月 4日 消防法 改正에 의해 同法 제 6 조 消防검사에 대한 特例가 삭제되어 당 協會의 安全點檢이 消防検査에 代身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内務部 訓令 제 610 號의 제 4 조 「소방 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點檢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따라서 삭제되어 훈령 제 705 號로서 公布(82. 2. 11)되었으며 제 4 조 以外의 다른 부분은 變動이 없다.

다음은 改正된 訓令의 全文이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의한 한국 화재 보험협회(이하 “화보”라 한다)의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안전점검결과처리의 신속, 적정 을 기함으로서 화재예방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보 및 화보의 안전점검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방관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된다.

제 3 조[안전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작성] 화보는 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삭 제]

제 5 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및 통보] ① 화보는 매년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12월 15 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보가 보험계약갱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반기별로 반기개시 1개월전에 대상별 · 월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계획서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방검사로 갈 음할 수 있도록 대상별 · 월별 소방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화보의 안전점검은 방화안전관계법령(소방법 · 전기사업법 · 건축법 ·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 열관리법 등) 및 점검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 대상물의 관계자(점검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점검 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화보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1월이내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화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과 화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안전점검결과의 통보] ① 화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화안전관계법령상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 1호서식

에 의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전축·전기·가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통지서는 정부공문서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서의 처리) ① 소방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결과의 세밀한 검토

2. 동일점검대상물에 대한(소방검사 결과)의 기 조치 여부 및 사실 확인

3. 시정명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동일점검대상물의 동일전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점검의 제한) ① 소방검사로 갈음되어 행정명령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화보의 장은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없이 확인점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화보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요원의 교육) 화보의 장은 점검요원의 점검능력 및 자질향상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체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고) ① 화보의 장은 매분기별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보의 장은 연간 실시한 점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화재예방안전점검결과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지침(소방 2052-13944, 1974. 12. 8)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결과조치) 화보의 현행점검기준은 1980. 6.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 消火設備割引規程의 改正

屋内消火栓과 自動火災警報機의 消火設備規程이 韓國保檢公社의 認可를 받아 改正되었다.

이에 앞서 當 協會에서는 80. 12. 23 全面적으로 改正된 消火設備割引規程에 의하여 割引検査를 實施하여 오던 중, 割引혜택의 受惠者의 범위를 더욱 擴大하여 火災保險에 대한 認識을 改善시키는 동시에 消火施設을 良好하게 設置, 維持 管理하도록 誘導하기 위해 消火施設의 能力を 低下시킬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同 規程을 다소 완화시켜 주도록, 屋内外消火栓, 自動火災警報機設備의 割引規程改正案을 마련 82. 1. 25 대한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였으며 손보협회에서는 이를 韓國保險公社에 提出, 認可를 받아 81. 5. 7 改正案이 確定된 것이다.

防災研究部에서는 同 改正內容을 본지부에 通報한 바 있다. 한편 81. 12. 29 實務作業을 完了하여